

의안번호	2216720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 계 번호	26B0853
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7억 3,000만원 (연평균 1억 4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(제5조)	80	—	—	—	—	80	16
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 (안 제19조)	130	130	130	130	130	650	130
합계	210	130	130	130	130	730	146

주: 유사사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방법·규모, 명예감시원 수 및 수당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어업, 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(이하 “불법어업등”이라 함)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5조(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6조(시·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)	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4	안 제7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	국가는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불법어업등 예방 및 관리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함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 재량규정
5	안 제18조(연근해어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)	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1. 연근해어업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 현황 및 어선의 현황 2. 제8조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현황 3. 제9조에 따른 어획실적 및 전채실적의 보고 현황 4.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5. 제14조에 따른 어획확인서의 발급 현황 6. 제16조에 따른 어획증명서의 발급 현황 7. 그 밖에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6	안 제19조(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)	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를 명예감시원 명예어업감시원(이하 “명예감시원”이라 함)으로 위촉할 수 있음(제1항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 재량규정
7	안 제20조(교육 및 홍보)	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불법어업등의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1조(포상금 지급)	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등 불법어업등의 방지 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9	안 제23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	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의 교육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—	• 미대상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어업, 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,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2	안 제5조(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• 유사사례 참고
3	안 제6조(시·도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)	—	• 미대상 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
4	안 제7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	×	• 미대상 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시·도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·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이 시·도지사와 불법어업등 예방 및 관리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— 다만,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및 협의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5	안 제18조(연근해어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)	—	• 미대상 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불법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						
6	안 제19조(불법 어업등 명예감시 원)	○	•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						
7	안 제20조(교육 및 홍보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제정안에 따라 불법어업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– 참고로,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근절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6예산</th></tr><tr><td>어업지도관리 (3132-303) (불법어업 근절홍보등)</td><td>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전 국민 의식제고 및 민간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어업질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수산자원보호 중요성 인식개선 도모</td><td>330</td></tr></table> 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	사업명	사업내용	'26예산	어업지도관리 (3132-303) (불법어업 근절홍보등)	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전 국민 의식제고 및 민간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어업질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수산자원보호 중요성 인식개선 도모	330
사업명	사업내용	'26예산							
어업지도관리 (3132-303) (불법어업 근절홍보등)	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전 국민 의식제고 및 민간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어업질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수산자원보호 중요성 인식개선 도모	330							
8	안 제21조(포상금 지급)	-	• 미대상 –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6예산</th></tr><tr><td>어업지도관리 (3132-303) (불법어업 근절홍보등 -신고포상금)</td><td>수산관계법령 위반반 자를 검거공로·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등 어업인 주도의 자율적 어업감시 기능 강화 *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</td><td>100</td></tr></table> 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	사업명	사업내용	'26예산	어업지도관리 (3132-303) (불법어업 근절홍보등 -신고포상금)	수산관계법령 위반반 자를 검거공로·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등 어업인 주도의 자율적 어업감시 기능 강화 *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	100
사업명	사업내용	'26예산							
어업지도관리 (3132-303) (불법어업 근절홍보등 -신고포상금)	수산관계법령 위반반 자를 검거공로·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등 어업인 주도의 자율적 어업감시 기능 강화 *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	100							
9	안 제23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,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						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8,0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
 - 추계기간 중 첫해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해양수산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과제명	연구기간	계약금액
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	2021.3.~2021.12.	180
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어도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	2022.9.~2022.12.	49
수산물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	2020.3.~2020.11.	55
수산물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	2021.12.~2022.6.	36
평 균		80

자료: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 검색

[표 3]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80	-	-	-	-	80	16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 위촉(안 제19조)

-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,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제정안은 명예감시원에 대한 경비 지급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 - 해양수산부장관이 동해·서해·남해어업관리단¹⁾ 각 12명씩 총 36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
 - 명예감시원 수당은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 ※ 이때, 명예감시원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 위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억 3,500만원(연평균 2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 위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명예감시원 수(A, 명)	36	36	36	36	36	—	—
명예감시원 수당(B, 백만원/명·연)	3.6	3.6	3.6	3.6	3.6	—	—
추가재정소요 (D=A×B, 백만원)	130	130	130	130	130	650	130

주: 1.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명예감시원 수 및 수당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동해·서해·남해어업관리단: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어업의 지도·단속·조정·관리를 담당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